

KAU 상담지원 위원회 규정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20.8.24		16		
2	2021.12.13		17		
3	2022.8.10.		18		
4	2023.5.8.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KAU 상담지원 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각 행정부서 및 학부(과)에서 진행되는 상담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으로 하며, 교무팀장, 교수학습센터지원실장, 학생지원팀장, 국제교류팀장, 생활관 운영팀장, 학생경력개발팀장, 인권센터 팀장(또는 부센터장)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8.10., 2023.5.8.>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.

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.

- ① 학과 주도 진로 심리상담 계획 및 결과 심의
- ② 전문 진로 심리상담 계획 및 결과 심의
- ③ 맞춤형 진로 심리 상담 계획 및 결과 심의
- ④ 진로 상담 역량 교육관련 업무 사항
- ⑤ 기타 진로 상담관련 부서에서 상정한 사항

제4조 (회의 및 심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내 진로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소집 한다.

②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제5조 (회의주관) ① 본 위원회는 학생생활상담소에서 주관한다.

②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학생생활상담소 상담연구원을 간사로 둔다.

제6조 (보고)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조 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.
2.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